

■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[별표 18]

해사안전우수사업자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기준(제59조제4항 관련)

1. 해사안전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가. 법 제59조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
 - 나. 별표 17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다. 효력 기간 중 효력정지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
2. 해사안전우수사업자에 대한 3개월 이내의 효력정지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가. 운영선박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2명 이하의 사망자나 실종자가 발생한 경우
또는 운영선박이 2명 이하의 사망자나 실종자가 발생한 해양사고를 일으킨 경우
 - 나. 여객선인 운영선박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로 인하여 4명 이하의 여객이 중상을 입은 경우
 - 다. 해양사고로 인하여 운영선박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운영선박이 해양사고를 일으켜 다른 선박에 중대한 손상을 일으킨 경우
 - 라. 운영선박이 별표 17 제2호라목에 해당하지 않는 해양오염을 발생시키거나 다른 선박이나 해양시설의 해양오염을 일으킨 경우